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 운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이라고 한다)과 한국역사연구회장(이하, “한국역사연구회”라고 한다)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성북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강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를 운영하기로 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능률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성북구청”과 “한국역사연구회”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성북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시행) “성북구청”은 “한국역사연구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① 사업의 추진 기간은 2015년9월10일부터 2015년10월8일까지하기로 한다.

②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북구청”은 수강생 모집·관리, 강의 장소 등을 제공하고 강사료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2. “한국역사연구회”는 강사진 및 커리큘럼을 기획·구성하고 강의 교재 및 필요시 영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강의계획서상의 강의 시간을 엄수하여 강의를 제공한다.

③ 강사료는 1강당 350천원으로 정하며 “성북구청”은 강좌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원천징수 후 강사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협약의 신의성실 이행)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이 구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 ①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본 사업”에 대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협약 당사자인 “성북구청”과 “한국역사연구회”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북구청”과 “한국역사연구회”는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성북구청”과 “한국역사연구회”가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성북구청”과 “한국역사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역사연구회”는 “성북구청”이 제출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파기한다.

② “한국역사연구회”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한국역사연구회”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성북구청”과 “한국역사연구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서명 후 상호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북구청”과 “한국역사연구회”가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일

성북구청장
김 영 배

한국역사연구회장
정 용 욱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 운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이라고 한다)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장(이하,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라고 한다)은 관내대학과 협력하여 성북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강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를 운영하기로 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능률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성북구청”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성북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시행) “성북구청”은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와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① 사업의 추진 기간은 2015년9월9일부터 2015년10월7일까지 하기로 한다.

②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북구청”은 수강생 모집·관리, 강의 장소 등을 제공하고 강사료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2.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는 강사진 및 커리큘럼을 기획·구성하고 강의 교재 및 필요시 영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강의계획서상의 강의 시간을 엄수하여 강의를 제공한다.

③ 강사료는 1강당 350천원으로 정하며 “성북구청”은 강좌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원천징수 후 강사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협약의 신의성실 이행)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이 구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 ①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본 사업”에 대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협약 당사자인 “성북구청”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

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북구청”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성북구청”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가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성북구청”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①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은 “성북구청”이 제출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파기한다.

②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성북구청”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서명 후 상호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북구청”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가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일

성북구청장
김 영 배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장
서 승 원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 운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이라고 한다)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이하,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라고 한다)은 관내대학과 협력하여 성북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강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를 운영하기로 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2015. 하반기 성북구 인문학강좌』(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능률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성북구청”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성북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시행) “성북구청”은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와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① 사업의 추진 기간은 2015년9월9일부터 2015년10월7일까지하기로 한다.

②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북구청”은 수강생 모집·관리, 강의 장소 등을 제공하고 강사료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2.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강사진 및 커리큘럼을 기획·구성하고 강의 교재 및 필요시 영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강의계획서상의 강의 시간을 엄수하여 강의를 제공한다.

③ 강사료는 1강당 350천원으로 정하며 “성북구청”은 강좌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원천징수 후 강사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협약의 신의성실 이행)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이 구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 ①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본 사업”에 대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협약 당사자인 “성북구청”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북구청”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성북구청”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성북구청”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성북구청”이 제출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파기한다.

②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성북구청”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서명 후 상호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북구청”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일

성북구청장
김 영 배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
김 영 진